

1. 개정이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2020. 9. 10. 시행)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기소 전 추정정보전명령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법을 다양화하고,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 관련, 사후 임시조치청구 서식 신설 및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별지 제106호의3서식, 별지 제106의4서식)

-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사가 사후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 사용할 서식을 별도 신설(별지 제106호의4), 관련 조문에 서식 명시 등 근거 마련, 종전 별지 제106호의3서식 제목에 ‘사전’ 추가

나. 사건 수리사유에 법원에서 송치한 아동보호사건을 추가, 수사 종결 시 검사의 결정 항목에도 ‘아동보호사건 송치’ 추가 및 관련 부수처분 규정 일괄 정비(안 제2조, 제10조, 제15조, 제57조, 제60조, 제69조, 제83조, 제84조, 제127조, 별지 제137호서식, 별지 제138호서식)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제44조 규정은 법원

에서 사건의 성질상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보호 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 수리사유에 이를 추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가 사건 수사를 종결할 때 할 수 있는 결정 항목에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추가

- 이와 관련, 고소인지정서 교부 대상자, 지문채취 등 대상사건, 사경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 ‘공소권없음’의 사유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추가, 송치결정 및 송치서 서식 등을 정비

다.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 신설(안 제12조의3, 별지 제18호의3서식)

-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참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취지에 따라 동 규정에도 참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서식 규정 추가

라.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식 다양화(안 제72조 제1항)

- 서면통지가 원칙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방식을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
하되, 피의자의 의사, 통지를 받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서면 통지도 가능

마. 항고결정서 양식을 기각여부와 관계없이 별지 제149호서식으로 통일
하고, 별지 제150호서식(항고사건기각결정서)은 삭제(안 제91조 제6호)

- 항고사건 결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항고기각 이유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개정

바. 사법경찰관 기소전 추정보전 신청 처리 근거 및 서식 신설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을 경우 추정보전을 청구하는 근거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3조 제2항, 별지 제247호의2 서식)
- 사법경찰관의 기소전 추정보전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기
각 결정을 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3조 제3항, 별지 제247호의3 서식)
- 사법경찰관의 추정보전 신청에 관한 법원, 검사의 기각 등의 경우 몰수
·추정보전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규정 제164조
제4항, 제5항 준용 규정 신설(안 제174조 제4항)
- 추정보전명령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취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관련서식 변경(안 제177조 제1항, 별지 제251호 서식)
- 사법경찰관의 기소전 추정보전 신청과 관련된 검사의 신청·보완·

수정·취소 등 요구에 관한 근거규정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7조 제2항, 별지 제251호의3 서식)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추정보전명령 취소 시 근거규정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7조 제3항, 별지 제251호의2 서식)
- 추정보전부에 일부취소 내용이 반영되도록 서식 수정(별지 제248호 서식)

사. 사건의 수리입력항목 중 ‘공안사건’을 ‘공공수사사건’으로 변경(별표 2)

- ‘19. 8. 1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에 따라 ‘공안’과 관련된 명칭과 사무를 각각 ‘공공수사’로 변경함에 따라 수정

아. 기타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106호의5서식, 별지 제106호의6서식, 별지 제117호의2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별지 제153호서식)

- 별지 제73호의 구속기간 연장신청 서식 중 ‘송치연월일’ 하단에 ‘인치연월일’을 추가
- 별지 제106호의4서식은 별지 제106호의5서식으로, 별지 제106호의5 서식은 별지 제106호의6서식으로 각각 변경
- 별지 제117호의2 압수물건처분 서식에서 ‘형제번호’와 함께 ‘압제번호’를, 별지 제151호 항고(재항고) 사건처분 통지 서식에서 ‘불항번호’와 함께 ‘형제번호’를 각각 병기
- 별지 제153호 공판카드 서식 상단에 증거기록제출 여부와 증거 미분리 여부를 표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년법」 제7조·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 및 제4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 및 제4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제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에 따라 각각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 중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의”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3항의”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를 “제163조의2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2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로, “피해자의 직계친족”을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으로, “피해자의 심리적”을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피해자 또는”을 “피해자, 참고인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피해자와”를 각각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피해자”를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피해자”로”를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가정보호사건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성매매보호사건”이라 한다)”를 “가정보호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성매매보호사건”이라 한다), 아동보호사건”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후단 중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3서식”을 “사법경찰관의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3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서에 의하고, 같은 법 제8조의3 제1항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 중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106호의4서식”을 “별지 제106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별지 제106호의5서식”을 “별지 제106호의6

서식”으로, 같은 조 제6항의 “별지 제106호의5서식”을 “별지 제106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아동보호사건 송치

제60조제3항 중 “가정보호사건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를 “가정보호사건송치·성매매보호사건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송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가정보호사건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를 “가정보호사건송치·성매매보호사건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송치”로 한다.

제69조제3항제4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별지 제127호 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를 “사건번호, 처분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의 의사, 통지를 받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 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7절 제목 중 “성매매보호사건”을 “성매매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49조제1항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제49조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매매보호사건”을 “성매매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으로 한다.

제84조 중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성매매를 한 자”는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하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로 한다.

제91조제1항 제6호 중 “별지 제150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기각결정서”를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결정서”로 한다.

제127조 제목 중 “성매매보호사건”을 “성매매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으로 하고, 제목외의 부분 중 “제12조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성매매를 한 자”를 “제1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한다.

제17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② 검사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정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의2서식에 따른 추정정보전 청구서에 의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검토하여 추정정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47호의3서식에 따라 추정정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77조제1항 중 “추정정보전명령의”를 “추정정보전명령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법 제5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추정정보전과 관련한 신청·보완·수정·취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의3서식에 의한 신청·보완·수정·취소등요구서에 의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정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의2서식에 따른 추정정보전명령취소

청구서에 의한다.

별표 2 수리입력항목 중 제9호 “공안사건”을 “공공수사사건”으로 한다.
별지 제106호의4서식, 별지 제247호의2서식, 별지 제247호의3서식, 별지 제251호의2서식, 별지 제25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50호서식은 삭제하며, 별지 “제106호의4”를 “제106호5”로, “제106호의5”를 “제106호의6”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3서식, 제73호서식, 별지 제106호의3서식, 별지 제117호의2서식, 별지 제137호서식,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별지 제153호서식, 별지 제248호서식 및 별지 제2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177조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12 –

○○○○검찰청 (전화번호) 구연 형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구속기간연장신청 검 사 ㉠ 아래와 같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① 성 명	
② 주 거	
③ 주민등록번호	(세)
④ 직 업	
⑤ 피 의 사 건	
⑥ 구 속 연 월 일	. . .
⑦ 송 치 연 월 일	. . .
⑧ 인치연월일	. . .
⑨ 연장요구기한	. . . 까지
이 유	

23231-397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청구(사전)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호인		
피해자	성명	주거
	직장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청구(사후)

검 사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호인		
피해자	성명	주거
	직장	
긴급임시조치를 한 일시, 내용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압 수 물 건 처 분 서 ☐ 구속구공판 ☐ 불구속구공판 ☐ 구약식					
년 형제 호 년 압제 호		주임검사 (인)			
피 의 자			죄 명		
결 정	. . .				
명 령	증제번호	인	집 행	인	비 고
가환부대로 본환부					
제출인환부					
피해자환부					
소유자환부					
국고귀속					
기록편철보관					
사진촬영기록 편철후폐기					
폐기					
보관					
환가처분					
※ 사진촬영이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사진촬영’하여 기록에 편철하거나, 명령란 상단에 ‘사진촬영후’라고 기재, 담당직원이 사진촬영하여 기록에 편철할 수 있도록 처분 ※ 소유권포기 의사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포기 받아 폐기’ 등으로 처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²)

○○지 방 검 찰 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사건			
수신자		발신자	○○검찰청
제 목	소년보호사건	검 사	(인)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아래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 의 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세)	
	③ 직 업		
	④ 주 거		
	⑤ 피해자와의 관계		
	⑥ 가정상황	성 명 : 주 거 : 피의자와의 관계 : 피의자의 ()	
⑦ 죄명			
⑧ 적용법조			
⑨ 범죄사실			
⑩ 송치사유		요 보호처분 (호)	
⑪ 기록권수			
⑫ 압 수 물			
⑬ 비 고			

210mm× 297mm(일반용지 60g/m²)

○○○○검찰청 (전화번호)	
집제	. . .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구치소장 경찰서장
제 목	이송지휘 검 사 ㉠
가 정 법 원 아래 사람을 지방법원 지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함 지방법원소년부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세)
③ 주 거	
④ 죄 명	
⑤ 이 송 사 유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검사 결정 법원
첨 부 : 1. 구속영장등본 1통 2. 구속기간 갱신결정등본 1통 끝.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²)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20 . .		
수신자	발신자	검찰청
제 목 항고(재항고) 사건처분통지		검 사 ㉠
에 대한 항고(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 였으므로 통지해 드립니다.		
처 분	① 사건번호	항(재항) 제 호 <○○지검(지청) 형제 호>
	② 연 월 일	
	③ 결 과	
이 유		
비 고 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①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 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 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② 그 밖의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검 찰청법」 제 10조제3항)를 각각 하실 수 있으며, 위 기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는 불기 소처분청(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재항고장은 우리청에 각각 제출하시면 됩니다.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²)



공 판 카 드

○○지방검찰청

			증거기록제출 (. . .)		증거 미분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 사 장	검 찰		형 제 호	
			사 건 변 호	1심	단 독 (부)	고단(고합) 호
수 사 검 사				2심	부	노 호
				3심	부	도 호
기소일자			죄 명			
직 관	승계 :					
피 고 인			변 호 인			
			기소시			
			1심			
			2심			
			3심			
심급	선 고		상 소			
1심	(201 . . .)		☐ 검사 (☐ 양형부당, ☐ 사실오인, ☐ 법리오해) ☐ 피고인 (☐ 양형부당, ☐ 무죄주장)			
2심	(201 . . .)		☐ 검사 ☐ 피고인			
3심	()					
범죄피해자 의사 확인						

[illegible]

자백여부

피고인 (전화번호)	※ 자백 ○, 부인×, 일부△		변호인 참여		부 인 내 용
	경찰	검찰	경찰	검찰	

구형

피고인	수 사 검 사	1심 공판검사		2심 공판검사	
	구 형	구 형	구형변경이유	구 형	구형변경이유

구형관련 특기사항	
※ 물수특정/추징/소년범/병합구형/형법 제37조후단 분리구형/감호청구	

증거관계

☐ 인증

구 분	성 명	참 고 사 항 (사건과의 관계 등)	필요조치사항
피 해 자			
고 소 인			

☐ 입증방법 및 그 밖의 사항

☐ 반대증거 및 탄핵방법

☐ 증거개시 거부대상 및 사유

정상정보

피해 및 회복	• 피해자 수 : ()명 피해품 : () 피해액 : ()원 • 진단 : • 참고사항 :
------------	---

□ 전과

피의자	전 과
-----	-----

• 누범 : 집행유예 기간 중 : • 최종형기 종료 후 : () 내 범행 • 동종 () 범죄전력 : ()회 이종 전력 : ()회 • 실형 전력 : ()회(동종 () 회) • 책임 보험 : 종합 보험 : ※ 범죄경력 조회 첨부필

□ 개선의 정 및 범행의 계획성

피의자	개전의 정	범행의 계획성

신병관계

피의자	기소시 신병	영장 기각 및 사유	구속 기소전 석방	별건 구속

사안점검표

피고 인	국민참여 재판 희망	추가 기소 예정	출국금지 조치 (수사검사)

☐ 공범

성 명	처리(예정)일	처분내역	참고사항

☐ 조사과정 녹화

피고인	기관	녹화 일자	녹화 시간	비고

공판시 확인사항

피 고 인	출국금지조치(공판검사)	공판시 개전의 정
	☐ 필 ☐ 미필 (☐ 조치필요 ☐ 조치불요)	☐ 유 ☐ 무

범죄피해자 의사 확인 및 통지

☐ ○○지방검찰청 형제 호

피 해 자	통지대상자	연 락 처	주 소	의 사 확 인	조 치

☐ 배상신청통지일 :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정보전 청구		검 사 인		
아래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정보전명령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추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 민 등 록 번 호		연 령	세
	주 거			
죄 명				
피 의 사 실 의 요 지		별지 추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추 정 의 근 거 법 령 조 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53조제1항, 제52조제1항		
추 정 보 전 액		별지 추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처 분 을 금 지 하 는 재 산		별지 추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별지 추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첨 부 : 1. 피의사실의 요지서 1통				

23231-85111일

210mm×297mm

20. . 승인

(일반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정정보전신청 기각		검 사 인		
아래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정정보전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정정보전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 민 등 록 번 호		연 령	세
	주 거			
죄 명				
피 의 사 실 의 요 지		별지 추정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추 정 의 근 거 법 령 조 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추 정 보 전 액		별지 추정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처 분 을 금 지 하 는 재 산		별지 추정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별지 추정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검찰청 검 사 인				

23231-85111일

210mm×297mm

20. . 승인

(일반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추 정 보 전 부 (년 제 호)											
성 명				사건번호	년 월 일 (직권) 지방법원 년 제 호			검 사			
청 구	년 월 일			발부	년 월 일 (직권) 지방법원 년 제 호			추 정 보 전 액	원		
취소청구	년 월 일			취소결정	년 월 일 (직권) 지방법원 년 제 호			기 소 일 자	. . .		
				취소내용	취소된 추정보전액 잔여 추정보전액						
가압류절차	집 행 절 차	명 령 일 자	. . .	추정보전 해방금	금 액	원		재 판	1심	년 월 일 지방법원 (요지)	
		신 청 일 자	. . .		납 부 일 자	. . .					
		피신청기관		공탁관계	공 탁 일 자	. . .			2심	년 월 일 법원 (요지)	
		결 과			금 액 등	원					
	집 행 정 지 · 취 소 절 차	명령일자	. . .	실효일자	. . .				상고심	년 월 일 (요지)	
		신 청 일 자	. . .								
		피신청기관		실효사유							
		결 과									
							확정연월일		. . .		
	비고										

23231-85211비

297mm×210mm

98.6.25 승인

(보통용지 60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정보전명령 취소청구		검 사 ㉠		
아래와 같이 추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추 정보 전 사 건 의 표 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정보전명령(년 제 호)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취소 대상		[] 전부취소 [] 일부취소		
일부취소 시 범위		(기존 추정보전액: 원)		
		취소청구 추정보전액: 원		
		잔여 추정보전액: 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제57조가 규 정하는 사유				
첨 부 :				

23231-85511일

210mm×297mm

20. . 승인 (일반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정보전명령 취소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건에 관하여, 추정보전명령 취소신청이 있 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추정보전명령의 (전부·일부)취소를 청구 합니다.				
추정보전사건의 표시		별지 추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취소 대상		별지 추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일부취소 시 범위		별지 추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제57조가 규 정하는 사유		별지 추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첨 부 :				

23231-85511일

210mm×297mm

20. . 승인

(일반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

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추정보전 신청(보완·수정·취소) 등 요구서

다음 추정보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보완·수정·취소)을 요구합니다.

가	부	비 고

접수일자	사건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요 구 내 용		
○○○ 검찰청 검 사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리사유) (생략)	제2조(수리사유)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년법」 제7조·제38조 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 여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의 송 치를 받은 경우	5. 「소년법」 제7조·제38조 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7조제2항·제37조제2항 및 제 4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제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각 가 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6. ~ 13. (생략)	6. ~ 13. (현행과 같음)

제10조(고소·고발·자수)

① (생략)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8조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외의 자를 고소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10조(고소·고발·자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3항의 -----

-----.

제12조의3(피해자 또는 참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
----- 제163조의2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2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 -----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

---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

② 피해자, 참고인 또는 -----

③ 피해자 또는 참고인-----

_____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_____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① ~ ③ (생략)

④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중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불기소의견, 참고인증지의견 또는 기소중지(피의자소재불명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명령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성매매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의 결정을 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사자료 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제56조의2(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① ~ ③ (생략)

④ -----

-----가정보호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성매매보호사

건"이라 한다) 또는 아동보호사

건 -----

-----.(후단 현

행과 같음)

56조의2(임시조치의 청구) ① --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2 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서에 의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3 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서에 의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106호의4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신청 기각서로 기각하고,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임시조치를 재신청하도록 할 수

-----, 사법경찰관의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3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서에 의하고,
같은 법 제8조의3 제1항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의 청구
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
의4서식-----

② -----

별지 제106

호의5서식 -----

<신 설>

10. 아동보호사건 송치

제60조(처분결과통지등)

① ~ ② (생략)

③ 검사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112호서식에 의한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④ 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제60조(처분결과통지등)

① ~ ② (생략)

③ -----

-----가
정보호사건송치·성매매보호사건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송치-----

-----.

(후단 현행과 같음)

④ -----

-----가
정보호사건송치·성매매보호사건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송치-----

경찰청장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69조(불기소처분)

① ~ ② (생략)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 3. (생략)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단서 생략))

5. (생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9조(불기소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단서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72조(불기소처분등의 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7절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
· 성매매보호사건의 송치

제83조(송치서등) ①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제1항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2조(불기소처분등의 통지와 사실증명) ① -----

- 사건번호, 처분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의 의사, 통지를 받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절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
성매매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의 송치

제83조(송치서등) ① -----
----- 제49조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할법원에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
는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제13
7호서식에 의한 소년보호사건·가
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서에 의한다.

제84조(이송지휘) 검사는 구속중에
있는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소년보호사건 송
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또는 성
매매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
는 경우에는 당해 소년,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성매매를 한 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
지 제138호서식에 의한 이송지휘
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고·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생 략)

1. ~ 5 (생 략)

항 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
항 -----
-----.

② -----

-----성매매보호사건·아동
보호사건-----.

제84조(이송지휘) -----
----- 가정폭력행위자, 성매
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
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
호사건 송치 -----
-----, 가정폭력행위
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
대행위자 -----

-----.

제91조(항고·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기각결정서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7. ~ 8 (생략)

② ~ ⑤ (생략)

제127조(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제84조의 규정은 「소년법」 제50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성매매를 한 자의 피고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3조(추정보전의 청구) ① (생략)

<신설>

6. -----
-----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결정서 -----
-----.

7.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7조(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

-----제1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
-----.

제173조(추정보전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정보전을 청구하는

<신 설>

② 제16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7조(추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① 검사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에 의한 추정보전명령취소청구서에 의한다.

<신 설>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의2서식에 따른 추정보전청구서에 의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검토하여 추정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47호의3서식에 따라 추정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
----- 제1항 내지 제3항 -----
-----.

제177조(추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① -----
----- 추정보전명령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법 제5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추정보전과 관련한 신청·보

<u><신 설></u> <u>②</u> (생 략)	<u>완·수정·취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의3서식에 의한 신청·보완·수정·취소등요구서에 의한다.</u> <u>③</u> <u>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의2서식에 따른 추정보전명령취소청구서에 의한다.</u>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	---